

특집

정보보호관련 법규 동향

이 대 기, 조 영 섭, 조 현 숙, 진 승 헌,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I. 서 론

정보통신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고도화되고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Cyber Threat)과 개인정보 침해, 익명성을 악용한 인권침해, 스팸메일 무분별한 확산, 불건전 정보 유통, 사이버 중독 등과 같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지능화·악성화·경제 범죄화 되고, 급속도로 전파되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5 인터넷 침해사고로 전세계적으로 단시간 내에 인터넷 접속 마비사태가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정보보호의 법·제도 정비방안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물론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법체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정보보호관련 법들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고에서는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법규 동향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정보보호의 개요

1. 정보보호의 정의 및 필요성

정보 및 정보보호의 정의는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

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하며, 또한, 제4호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보호란 정보의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인위적·물리적·기술적·자연적인 장애기능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사후 회복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정보보호 등) 제1항에서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정부차원에서 정보보호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로 정보 자체가 비밀성이나 무결성 등을 보장하지 못하며, 무용지물될 소지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정보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둘째로 정보에 관련된 모든 자산,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손실과 왜곡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에 관련된 모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셋째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증가되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넷째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기밀정책의 유출·파괴·훼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보통신망의 보안 허점으로 인한 국가기밀정보의 위협은 국가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정보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과 정보의 역기능을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정보윤리의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2. 정보보호의 목표

정보보호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봉쇄를 보장하는 것으로 내부 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 인한 정보의 파괴, 변조, 불법유출 등의 범죄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유통 질서 확립과 정보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밀성(Confidentiality)은 정보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무결성(Integrity)은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그리고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용성(Availability)은 정보시스템이 적절한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에게 정보서비스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증(Authentication)은 수신자가 받은 정보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송수신자간에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부인봉쇄(Non-repudiation)는 송신자와 수신자사이에 전송된 내용에 대해 서로 부인할 수 없도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 정보보호 관련 법규

1. 법·제도 및 법령 현황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법·제도는 정보화촉진기

본법에서 정보보호의 기본 지침을 두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보보호 활성화 지침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형법에 컴퓨터범죄에 관련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는 법·제도, 산업, 기술, 국민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정보를 정확한 용도로 사용·운영할 수 있다.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과 컴퓨터의 보급확대와 정보통신망의 이용 확대에 따라 컴퓨터범죄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체적·부분적으로 법률의 정비 작업은 물론 체계적인 정보산업육성정책을 위한 정보보호에 관련한 표준, 기준, 평가제도가 발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컴퓨터범죄에 대응하는 침해사고 대응기구(CERT)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개인정보는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이버테러(Cyber Terror)로부터 정보의 재산성과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예방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법령 총건수 3,662건(2003. 5. 31. 현재/법제처 자료)이며, 그 내용은 헌법 1건, 법률 1,041건, 대통령령 1,376건, 총리령 23건, 부령 1,221건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공공정보기술관리법, 위치정보보호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전자문서이용촉진법) 등의 제정과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2. 헌법에서의 정보보호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질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 법이다. 1987년 10월 27일 개정·공포된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상 정보보호는 구체적 보호 규정을 두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권원(權原)의 확인을 통한 보호의 문제이다.

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와 같이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통신의 비밀보호

헌법 제18조의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와 같이 통신의 내용뿐 아니라 그 통신의 형태·당사자·전달방법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유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침해 받지 아니한다의 주요내용은 열람금지·누설금지·정보금지라 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자유(알 권리)

헌법 제1조, 제21조, 제34조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와 같이 정보생활이 실제에서 정보획득의 문제로서 개인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인 성격을 띤다.

④ 액세스권

헌법 제21조제4항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서와 같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 접근이용권으로서 개인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수 대중에게 전달을 보장하는 권리 말한다.

3. 법규의 개별적 분석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되었으며,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5장2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 목적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수집에 의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문제의 핵심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 신상정보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는 경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명단을 자사광고홍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2장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있어 보유 범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등을, 제3장은 처리된 정보의 열람·정정 등을, 제4장은 보칙규정으로서 수수료,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정부투자기관 등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 정보보호 등을, 제5장은 벌칙규정으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대외무역법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12월 13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7호로 최

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8장10절6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 조항은 제21조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등에 대하여 수출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54조제2호에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자나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이 법은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479호로 제정되었으며,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9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2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1장 총칙에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제4장에서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7장에서는 무역자동화망에서 이용되는 전자문서나 컴퓨터 파일의 훼손·누설·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90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2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2조에서 전자문서, 전자서명에 대해 정의를 하였고, 제8조에서 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 산업정보망의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 법은 신용정보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1월 5일 법률 제486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8월26일 법률 제670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6장3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19조에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업무목적외 누설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처벌에 관한 조항은 제32조 제2항 제9호,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3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 5장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15조에서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8조에서 금지행위 등에 관한 규정, 처벌에 관한 조항은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7)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9장16절103조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92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에 관한 조항은 제97조의 5,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8) 전기통신기본법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3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4절5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은 아니며, 다만 통신의 관리 차원에서 제22조에 비상시의 통신확보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제30조에서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정보통신부에 두도록 규정(동법 제37조, 제44조의 2)하고 있다.

9) 전기통신사업법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868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2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4절7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라 본문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3조의 2에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54조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을 따로 두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비밀의 침해 또는 누설을 방지하는 규정을 통해 전기통신 역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10) 전자거래기본법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4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4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1장 총칙에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제2장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로 개인 정보보호, 암호제품 사용 등과 소비자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자거래기본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등을, 제5장에서는 전자문서 이용촉진,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거래 기술개발 추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11) 전자서명법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3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조항은 제2조에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제3조에 전자서명의 효력 등과 제6조에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4조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7조의 2에 외국정부와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地位 또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 도용, 누설,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 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 5월 15일 법률 제6871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전자정부법은 총 7장5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전자정부, 전자문서, 행정전자서명 등 용어의 정의를, 제2장은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등을, 제3장은 전자문서의 송·수신,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등을, 제4장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13)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2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9장3절9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 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선통신관계자에 의한 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제66조에서 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91조제3호에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26일 법률 제638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96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3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전자적 침해행위 등 용어의 정의를, 제2장은 정보통신기반위원회 설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지원 등을, 제3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분석·평가를, 제4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제5장은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등을, 제6장은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7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금지, 비밀유지의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5월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97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정보통신망법은 총 9장4절6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제45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제4장 제4절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사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02. 7. 11.)되었으며, 스팸메일방지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제52조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을, 제59조에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설립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9장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의 규정,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규정, 비밀유지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6)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9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6장 3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 조항은 제2조에서 정보보호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10조에서 한국전산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 2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 정부의 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와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 강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조에서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3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 5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기술적보호조치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용어 정의를, 제12조의 2에서 프로그램역분석에 대한 행위를, 제29조에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을, 제30조에서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를, 제35조에서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한 심의와 분쟁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기술적보호조치 침해 등의 금지 규정,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8)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율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우편물, 전기통신의 비밀보호문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통신비밀 침해에 관한 일반법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을 제정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동법 제3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제16조)하여 통신비밀을 직접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동법은 이 외에도 불법검역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도청에의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취득한 내용의 공개금지 및 사용제한,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타인의 대화비밀침해금지 및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각종의 규정을 두고 있다.

19) 형법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효과로서 어떠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법으로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3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2편46장13절37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형법은 그 침해행위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였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침해도 반드시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이

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 형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형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었다.

- ①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제140조제2항)
- ② 공용서류 등의 무효화죄 (제141조제1항)
- ③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제227조의2)
- ④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 (제229조)
- ⑤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제232조의2)
- ⑥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제234조)
- ⑦ 업무방해죄 (제314조제2항)
- ⑧ 비밀침해죄 (제316조제2항)
- ⑨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7조의2)
- ⑩ 재물손괴죄 (366조)

이러한 규정들이 정보를 침해하는 각종의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은 정보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다.

20) 화물유통촉진법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1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10장5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제2조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6장에서 물류정보화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장에서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의 위작·변작, 물류정보의 비밀 침해·훼손·도용·누설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1) 기타

이외에도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법, 상표법, 소비자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특허법 등도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IV. 결 론

인터넷이 각종 정보교환과 전자거래 등의 수단으로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전자적 침해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 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인터넷관련 정보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제가 필요하며, 정보보호관련 법령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복리 및 국민의 사생활보호 등에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제·개정을 통해 정비되어야 하겠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문서 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116개 법률 일괄 정비계획은 일본의 IT일괄서면법과 같이 단일 정비법을 제정하여 대상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범죄행위의 중요 유형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및 웹사이트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의 유형 및 정의, 처벌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할 만큼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것으로 하며, 특히 조직적이거나 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의 재범시에는 법에 의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5 인터넷 침해사고 대책수립 정책토론회,

21세기 정보보호발전 세미나 등에서 정보보호관련 법령 정비가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제반 정보보호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제도가 조속히 재정립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키는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와 이용자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선화, 박기식, 신범철, “우리나라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1995. 6.
- (2)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현상”, 컴퓨터출판, 1996. 7.
- (3) 한국정보보호센터, “국내외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1996. 12.
- (4)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월간 정보화사회, 1997. 4.
- (5) 신일순, 박민성, 류인모, “정보보안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12.
- (6) 강경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 (7) 정보통신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고시 제2002-23호)”, 2002. 5. 1.
- (8) 이대기, 조영섭, 진승현, 정교일,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지, 2002. 8.
- (9) 정보통신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 2002. 8.
- (10) 이대기, 노종혁, 김태성, 진승현, 정교일,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CISC2002, 2002. 11.
- (1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2.
- (12) 강경근, “정보보호 법제도의 정비/정보보호

-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부, 2003. 3. 13.
- [13] 산업자원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116개 법률 일괄 정비 계획”, 2003. 5. 7.
- [14] 남길현, “사이버전 대응 기술과 민·군·관

CERT 공동 대응 방안/21세기 정보보호발전 세미나”,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2003. 5. 16.

- [15] <http://www.moleg.go.kr>(법제처 종합법령정보)

저자 소개



이 대 기

1966년 2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사), 1987년 2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1966년 2월~1980년 3월 정보통신부 통신사무관, 1980년 4월~1998년 7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호기술연구부장/책임연구원, 1998년 9월~현재 : 프로토정보통신(주) 정보보호컨설팅본부장, 2000년 1월~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초빙연구원, <주관심 분야 : 정보보호법제도·정책,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정보시스템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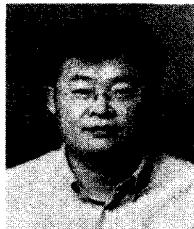
조 영 석

1993년 2월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공학사), 1995년 2월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공학석사), 1999년 2월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공학박사), 1998년 12월~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인증, 인가), 유비쿼터스 보안>



조 현 숙

1979년 3월 전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1991년 8월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2001년 2월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1982년 3월~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장 역임, 국책연구개발사업단 책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 CAS, 이동인터넷보안, 네트워크보안>



진승현

1993년 2월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학사), 1995년 2월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석사), 2003년 2월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수료, 1994년 12월~1996년 4월 : 대우통신 종합연구소, 1996년 5월~1999년 5월 :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1999년 6월~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장/선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유비쿼터스 보안, 정보보호(인증, 인가)>



정교일

1981년 2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1983년 8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1997년 8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1982년 3월~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정보보호기반연구부장/책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 IC Card, Security, Biometrics, 국가기반보호, 신호처리>